

현황 2 「경기도 생활임금 조례」 등 4대 조례 현황 공정경제과

□ 4대 조례 현황(2014.6.30. 대법원 제소 / 2014.8.12. 소 취하)

조례명	주요내용	제소사유
생활임금 조례	○ 공무원 보수규정 미적용도 소속 근로자에 생활임금 지급 ○ 위탁·용역업체 선정시 생활임금 지급업체에 가점부여	○ 생활임금은 국가사무이며, 생활임금 지급을 수탁기준으로 하는 것은 「지방계약법」 위반
공공산후조리원 설치조례	○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운영 가능 ○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이나 시군에 경비지원	○ 기초자치단체 업무이며, 민간영역에 대한 행정개입은 부적절
급식시설방사성 차단 조례	○ 방사능물질 차단 검사 계획 수립, 급식시설 방사능 검사 ○ 급식시설 및 시민이 요청하는 방사능물질 검사(연2회 이상)	○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·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감 권한 침해
6.25전쟁희생자 지원 조례	○ 추모 및 위령사업 시책 강구 ○ 추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	○ 6.25 전쟁 희생자 지원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위법함 ○ 본회의 부의기간(10일) 경과

□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쟁점

구분	도 일부개정안	의원(윤재우) 전부개정안
적용범위	▶ 제3조 (생활임금대상) • 도 소속 근로자	▶ 제3조 (적용범위) • 도 소속 근로자 • 출자·출연기관 소속근로자 • 공공계약(간접고용) 용역근로자 (하도급 근로자 포함)
	▶ 제5조 (생활임금장려) • 공공계약 적용 권장	▶ 제6조 (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등) • 공공계약 적용 의무화
위원회 설치	▶ 시행규칙 제정('15.3.6)	▶ 조례안(제7조~11조)에서 규정

○ 도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직접고용 근로자로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 추진중, 윤재우의원(새정치연)이 출자·출연기관 및 공공계약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으로 난항

◆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제6차 회의('15.4.6) 안건으로 논의 끝에 “도소속 직접 고용 및 출자·출연기관 소속근로자” 로 적용 확대 합의